



# 2022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



석면은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규정한 **발암물질 1군** (Group 1)으로 흡입하면 10~50년 후 폐암, 악성중피종,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킵니다. 이에, **경상남도**에서는 **석면피해의심지역**(석면공장,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, (수려조선소)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**석면 관련 무료 건강검진**을 실시하고 있으니, 아래 일정을 참조하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## 검진 대상

- 조선소·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  
※ 주요지역(행정동): 산양읍, 광도면, 도천동, 명정동, 중앙동, 정량동, 미수동, 봉평동
-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 10년 이상 거주자  
※ 주요지역: 통영시 전 지역
- 과거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 및 가족  
※ 건축·건설업(슬레이트 시공·철거, 건물철거·수리업), 선박건조·수리업, 보일러·배관작업, 자동차 정비업 등
-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여 희망자(단, 현재 경남 거주자)

## 검사 항목

- 기본(1차) 검진 - 의사진찰, 흉부 X-ray, 설문조사
- 정밀(2차) 검진 - 의사진찰, 흉부 CT, 폐기능검사 ※ 기본검진 결과 석면질병 의심 소견이면 정밀검진 실시

## 검진 일시 및 장소

| 검진 일자              | 검진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진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9월 17일(토) ~ 18일(일) | 통영리스트ार्ट플랫폼<br>1층 아트홀 통(소극장)<br>(도남로 195) | 오전 10시 ~ 오후 4시<br>(점심시간: 12시 ~ 오후 1시) |

## 안내 사항

- ①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,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.
- ② 오전(10시~11시)에 많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오후에 오시길 바랍니다.
- ③ 정밀검진 결과 석면질병으로 진단되면 '환경성 석면피해인정' 또는 '산재보상'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④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지 포함)을 소지하시면 보다 빠른 검진이 가능합니다.
- ⑤ 위 일정은 '코로나-19' 등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⑥ 자세한 사항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(055-360-3770~2)로 연락주세요.

#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

## 석면피해구제제도란?

- 석면은 발암물질 1군으로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킴.
- 근로자의 경우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.
-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.
- ☞ 이에 『석면피해구제법』을 제정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함.

##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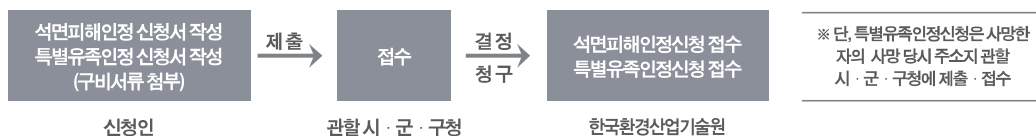
-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, 『공무원연금법』, 『군인연금법』, 『선원법』, 『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』, 『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』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자

##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은?

- 원발성 악성중피종(잠복기 약 20~35년):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
- 원발성 폐암(잠복기 약 20~40년):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
- 석면폐증(잠복기 약 15~40년):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, CT 영상판독에 의해 병형 및 폐기능 장애정도에 따라 1~3급으로 구분
- 미만성 흉막비후(잠복기 약 10~20년):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

##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

- 신청 대상자: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법 시행일 전·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
- 신청절차: 관할 시·군·구청의 환경위생과 등 석면피해구제 담당자 방문 후 진행



- 처리기간: 석면피해(특별유족) 인정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(단,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)

##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

- 구제급여의 종류: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, 구제급여조정금

### - 구제급여 금액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   | 요양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생활수당 (2022년 기준)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석면폐증 |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| 피인정자<br>부담금액 전액<br>(연간 본인부담<br>상한액 내) |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.5% | 1,548,540원/월   |
|      | 미만성 흉막비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.2% | 1,114,940원/월   |
|      | 제1급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.2% | 1,114,940원/월   |
|      | 제2급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.8% | 743,290원/월     |
|      | 제3급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.4% | 371,640원/월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유효기간(5년) 동안 지급 |

※ 2022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3,260,085원/월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1호)

- 장의비: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, 2022년 기준 2,924,290원
-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(2022년 기준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유족조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석면폐증 |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| 장의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(43,864,350원)  | 일시 지급 |
|      | 미만성 흉막비후            | 장의비의 7.5배에 해당하는 금액 (21,932,170원) |       |
|      | 제1급                 | 장의비의 7.5배에 해당하는 금액 (21,932,170원) |       |
|      | 제2급                 | 장의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(14,621,450원)   |       |
|      | 제3급                 | 장의비의 2.5배에 해당하는 금액 (7,310,720원)  |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· 유족지급순위: 배우자>자녀>부모>손자녀>조부모 또는 형제자매

- 구제급여조정금: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
구제급여조정금 = [특별유족조위금 - (요양급여+요양생활수당)]

- 구제급여는 반드시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접수



- ☞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,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필요